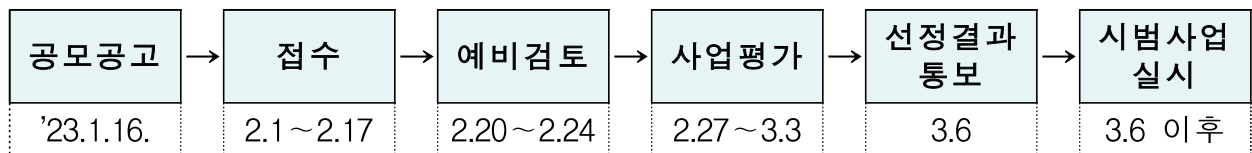


배포 일시	2023. 1. 13.(금)		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 김유진 (044-201-4598)
		담당자	서기관 이혜선 (044-201-4998)
			사무관 전대훈 (044-201-4997)
		주무관 김효진 (044-201-4159)	
보도일시	2023년 1월 16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15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오래되고 위험한 기반시설 개선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- '2023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' 공모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월 16일 '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'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.
- 지방자치단체는 「기반시설관리법\*」에 따른 기반시설\*\*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
  - \* 기반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·성능개선을 위한 기본원칙·재원조달에 대한 기본법
  - \*\* 도로, 어항, 상·하수도, 공동구, 하천, 저수지 등 15종
-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%까지, 최대 5억원을 지원(총 25억원)할 계획이다.
-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지원대상은 예비검토,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.

### < 공모일정 >



\*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 뉴스·소식-공지)에서 확인 가능

□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, 그간 1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.

<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(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8) >

안전등급	시설물의 상태
1. A (우수)	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
2. B (양호)	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,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
3. C (보통)	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있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, 간단한 보수·보강이 필요한 상태
4. D (미흡)	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·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
5. E (불량)	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

○ (사례 1) 2개 마을의 주요 진입로였던 전남 순천시 내동교(1997년 건설)는 2020년 안전등급 E를 받아 사용 중단된 상태였으나, 2021년 개축 수준의 개선 공사 후 B등급을 받아 주민불편이 해소되었다.

< 내동교 개선 전후 비교 >



- (사례 2) 1972년에 조성된 충북 옥천군 대안저수지는 2019년 안전등급 D를 받았고, 다음 해 재해위험 저수지\* 지정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였으나 성능개선 후 A등급으로 상향되었다.

\* 「저수지법」 제9조에 따라 산사태 또는 홍수 대응능력 저하 등 우려 시 지정현재는 지정해제 절차 진행 중

< 대안저수지 개선 전후 비교 >



-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“우리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, 이번 공모에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” 고 말했다.





**참고1**

**[개선 후) 전남 순천시 내동교, 충북 옥천군 대안저수지 전경**

전남 순천시 내동교



충북 옥천군 대안저수지





# 2023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공모사업

지자체의 성능개선이 시급한 노후 기반시설을  
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합니다.



### ◦ 신청자격 ◦

- ⊕ '기반시설관리법' 제 20조에 따른 정부지원 원칙에 부합하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응모
- ⊕ 정부지원 원칙 : ① 건설 당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 기반시설
  - ②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
  - ③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한 지자체 (공모사업 선정 이후 연내 적립 가능한 경우 포함)

### ◦ 지원대상 ◦

- ⊕ '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'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

### ◦ 지원규모 ◦

- ⊕ 총 25억원  
※ 1개 사업당 국비 최대 5억원 지원(자방비 50%이상 매칭)

### ◦ 지원내용 ◦

- ⊕ 예산 지원 및 사업관리, 모니터링 등 종합 관리·지원

### ◦ 공모기간 ◦

- ⊕ '23년 2월 1일 ~ 2월 17일까지

### ◦ 제출방법 ◦

- ⊕ 공문 : 시·도에서 시·군·구의 신청서까지 취합 제출
- ⊕ 관련자료 : 관리주체별 기반터 시스템 업로드

### ◦ 평가방법 ◦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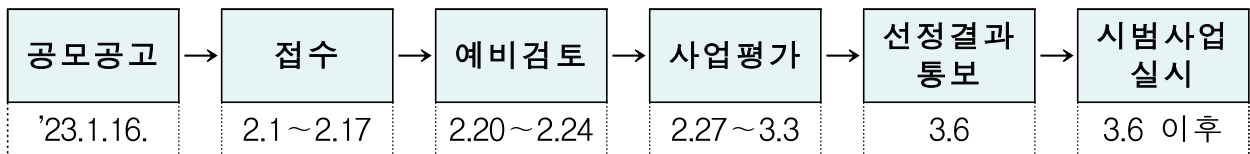
- ⊕ 1. 예비검토 : 지원대상 적격성, 유의사항 준수여부 등 검토
- ⊕ 2. 사업평가 : 사업계획서 등 평가

□ 목적

- 노후기반시설의 선제적 관리제도\*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여, 국가-지자체 간 관리 불균형 해소, 자발적 참여·관리 등 도모
- \* 「기반시설관리법」 제정('20.1 시행)에 따라 기본-관리-실행계획의 이행체계 확립, 관리재원 확보 기반 마련, 기반터 시스템 구축 등

□ 공모 계획

- (대상) 개선이 시급한 기반시설\*에 대해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자체(광역 또는 기초)
- \* 「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15종
- 「시설물안전법」 상 안전등급 등을 감안하여 성능개선이 시급한 기반시설\*에 대해 예산 및 사업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
- \* D, E등급 시설 및 이에 준하는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
- (지원예산) 총 25억원(1개 사업당 최대 5억원, 지방비 50% 매칭)
- (선정방법) 예비검토(적격성) 및 선정위원회(적정성, 시급성 등) 평가
- (추진일정) 연내 사업완료를 위해 추진현황도 지속 점검



□ 향후 계획

- 보도자료 배포('23.1.16), 사업설명회 개최(1월중), 시범사업 선정(3월)

<p>&lt; 그간 시범사업 추진현황('21년부터 추진)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'21년 지원액/신청액) 20억원/ 47억원, (선정/신청) 11개/22개 사업</li> <li>○ ('22년 지원액/신청액) 25억원/118억원, (선정/신청) 7개/39개 사업</li> </ul>
--